

청주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78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김교형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826,515원 및 그중 24,092,202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2022. 5.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1.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2. 3. 접수 제37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던 피고 A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행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자	거래은행	보증기한 (연장된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1	E	2019.07.24.	D은행	2020.07.23. (2022.07.23.)	4,000,000
2	F	2020.05.04.	D은행	2021.04.07. (2022.04.07.)	20,000,000

2) 피고 A에 대하여 2021. 11. 23.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채납포함)이 이루어지고, 이어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2022. 1.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5. 4. D은행에 대출원리금 24,092,2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적절차비용,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이후 715,793원의 법적절차비용, 18,52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8%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A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22. 1. 11. 피고 B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2. 2. 3. 피고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742호로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826,515원(= 대위변제금 24,092,202원 + 법적절차비용 715,793원 + 추가보증료 18,52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4,092,2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5. 30.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후인 2022. 5. 4.에 성립하였으나, 위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2. 1. 11.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로서는 이로 인해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자신이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 A에게 대여금, 건강보험 대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3,96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1. 11. 피고 A와 그동안의 모든 채권을 차용금 1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당시 피고 A로부터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고지받지도 못하였고 피고 A의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있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설정계약의 경위가 피고 B의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가 채무변제를 제때 못할 정도로 자산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말소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22. 1. 11. 체결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별 지 목 록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183㎡

2. 충청북도 충주시

[도로명주소] 충주시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주택 84㎡

점포 18.84㎡

보일러실 4.5㎡

2층 주택 87.81㎡

